#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7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최민희·김남희·김용만

김윤덕 · 김준형 · 김현정

문진석 • 박민규 • 오세희

유동수 • 윤준병 • 이병진

이원택 • 이정헌 • 정성호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 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6호)의 의 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11제4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제2조제14호나목 중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전송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 2.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 4.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 ⑥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범위·수수료, 제4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6. 제22조의11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송자격인증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11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 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 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2조의11제4항에 따른 전 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 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 다) <u>4.</u>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제2 조제14호나목 중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 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

- 자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 인증을 위하여 보안관리 체계 를 포함한 인증의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 ③ 전송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경우
- 2.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 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3.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 의8까지를 위반한 경우 ⑥ 전송자격인증의 방법・절차 ·범위·수수료, 제4항에 따른 인증서의 발급 및 제5항에 따 른 인증취소의 기준 •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명령 등) ① -----

를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1. ~ 3의5. (생 략) <u><신 설></u>

4. ~ 6. (생략)

② (생략)

_	 	_	_	-	_	_	_	_	_	-	_	-	-	_	_	-	-	_	-	-	-	-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 3의5. (현행과 같음)
 3의6. 제22조의11제5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4. ~ 6. (현행과 같음)

1. O. (E 0 ) E

② (현행과 같음)